

## 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9.05.10
3. 주요 정정사항 :
 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  - 법 개정사항 반영

**[규약]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15조(자산 운용지시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략)	① (현행 유지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05. 10> ③ ~ ④ (현행 유지)
제17조(투자 대상자산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제1항의 --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) 2 ~ 4. (생략)	① (현행 유지) ② 제1항의 --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) <개정 2019. 05. 10> 2 ~ 4. (현행 유지)
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	단서조항 추가	① (생략) ② 1. ~ 5. (생략)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~ 10. (생략)	① (현행 유지) ② 1. ~ 5. (현행 유지)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(단,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항인 경우 제외) <개정 2019. 05. 10> 7. ~ 10. (현행 유지)
제45조(투자 신탁의 해지)	법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1. ~ 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</u> 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 유지) ② 1. ~ 4. (현행 유지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</u> 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9. 05. 10> ③ (현행 유지)
제49조(금전 차입 등의 제한)	법 개정사항 반영	① 1. ~ 2. (생략) 3. <신설>	①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<u>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</u>

		②~⑤ (생략)	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<개정 2019. 05. 10> ②~⑤ (현행과 동일)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① ~ ⑤ (생략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 ~ ⑧ (생략)	① ~ ⑤ (생략)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9. 05. 10> ⑦ ~ ⑧ (현행 유지)
제52조(수익 증권의 통장 거래)	약관 명칭 변경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05. 10>
부칙	-	-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집합투자업자	대표이사 변경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현 철 (인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우 철 (인)

[변경등록신청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9.05.10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 인력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	법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대상 [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]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	가. 투자대상 [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]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

		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단기대출(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) 2. ~ 4. (생략)	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단기대출(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) 2. ~ 4. (현행 유지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최근일자 업데이트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자문서비스 제공 회사-운용자산규모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자문서비스 제공 회사-운용자산규모 <u>최근일자로 업데이트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설정 후 3년 경과,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 변경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<u>설정 후 3년이 미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u>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<u>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.67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일자 업데이트	가. 회사개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<u>주요주주현황 : 부국증권(주) 99.05% /우리사주 조합 0.92% / 기타 0.03%</u>	가. 회사개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<u>주요주주현황 : 부국증권(주) 99.9% /우리사주 조합 0.1%</u>
	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		라. 운용자산규모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<b>제5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가. 의무 해지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</u>	가. 의무 해지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</u>

		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	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3.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신탁업자는 -- 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다만, -- 있습니다.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신탁업자는 -- 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다만, -- 있습니다.</p>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자구 수정	<p>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 <p>(마) 약정배분기준</p> <p>- <u>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"중개회사별 매매주문 계획서"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</u></p> <p>- <u>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다.</p>	<p>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 <p>(마) 약정배분기준</p> <p>- <u>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(마) 약정배분기준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"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"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</u></p> <p><u>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.</u></p>

<끝>.